

# 정보공개편람



# 《 목 차 》

1. 정보공개제도란?	1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2
3. 불복구제 절차	6
4. 정보공개 청구서식	8
5. 정보공개 비용	12
·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목록	15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19

# 1. 정보공개제도란?

##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 등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 정보공개 대상 기관(방송통신 관련)

- 국가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기타 공공기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방송사에 대하여는, 방송법 제90조제5항, 방송법 시행령 제65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별도청구](#))
- ※※ [방송 심의·제재](#)에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http://www.kocsc.or.kr))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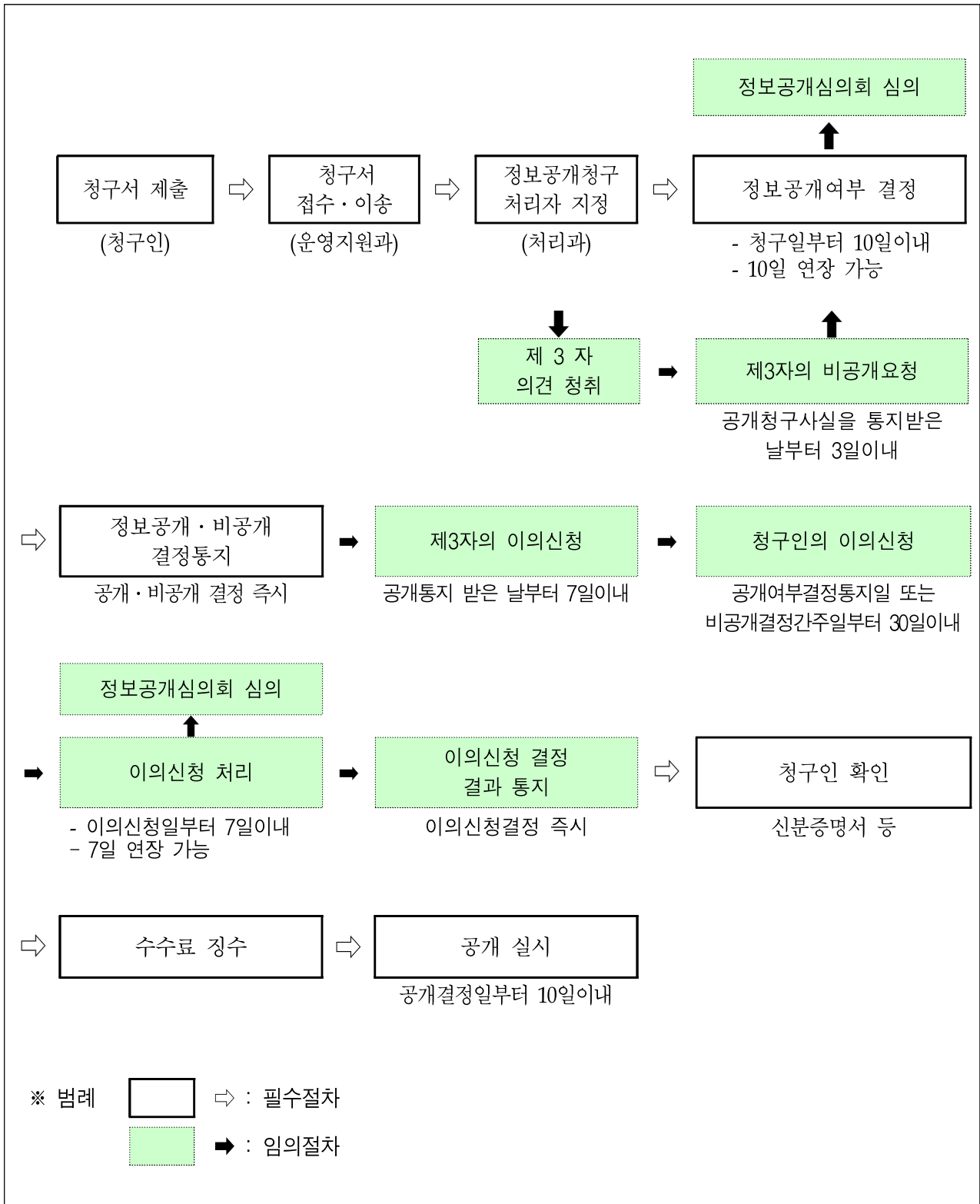
## □ 정보의 공개방법

- 정보 원본을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출력물을 교부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및 외국인(국내 거주 또는 체류 외국인에 한함)

##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가능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작성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2)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후 청구인에게 이송사실을 통지
- 이송 대상기관이 과다한 경우는 이송을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소관 기관을 안내

### (3) 정보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간의 기산점 : 직접 방문 및 청구 시 : 청구서를 제출한 날
  - 결정기간 기산 시 토요일 포함, 공휴일 제외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문서로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 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4)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 즉시 청구인에게 바로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
  - 공개일시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정보의 양이 과다할 경우,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교부하거나, 정보를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절차 명시

#### (5) 공개 실시

- 공개방법
  - 본인 확인 필요가 없을 경우 :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송부
  - 본인 확인 필요가 있을 경우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위임장 등 확인 후 공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납부 : 수입인지 또는 온라인 납부(신용카드, 휴대전화, 계좌이체)
- 공개결정통지서
- 필요 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의 원본이 훼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복제물로 공개가 가능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 가능
-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3. 불복구제 절차

#### □ 불복구제의 개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순서에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음

####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



## (2) 행정심판

-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 :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3) 행정소송

- 제소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전송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m<sup>2</sup>(재활용품)]

##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 공개내용		
통지서수령 유무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이의신청의 취 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귀하

## 5. 정보공개 비용

### □ 청구인의 정보공개 비용 부담

- 정보공개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청구인이 부담
- 정보공개 비용은 '수수료'와 '우송료'로 구분됨
  - 정보공개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

#### ※ 정보공개수수료 감면

- 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감면사유 소명자료 첨부 : 학술·연구 등의 계획서, 단체·법인 대표자의 확인서, 대학교 총장·학교장의 확인서 등
- 감면비율 : 50%(수수료의 50%에 한함, 우송료는 제외)

- 우송료 : 국내통상 우편 중량별 요금표

중량	보통등기		익일특급	
	규격	규격외	규격	규격외
5g	1,900	2,020	1,990	2,110

\* 우편요금

구분	중량	보통우편
규격	5g까지	270원
	5g초과 25g까지	300원
	25g초과 50g까지	320원
규격외	50g까지	390원
	50g초과 50g까지마다	120원

## □ 정보공개수수료 산정 기준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li> </ul>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p>&lt; 비고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li> <li>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li> <li>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li> </ol>		



[별표 1]

## 사전정보공개기준

연번	대분류	중분류	공개내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1	위원회 전원회의	위원회 전원회의	위원회 의사일정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법무담당관	
2			위원회 회의록	자료발생시	수시		
3			위원회 속기록 (공개회의에 한함)	자료발생시	수시		
4			위원회 심의의결서	자료발생시	수시	이용자정책총괄과	
5	소관법령 및 업무보고	업무보고	연도별업무계획 (대통령연두업무보고)	1/4분기	매년	창조기획담당관	
6			대국회업무현황보고자료 -국정감사업무현황보고 -임시국회주요현안보고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법무담당관	
7			국정감사 및 임시국회 답변서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법무담당관	
8		법령·지침	위원회 소관 법령	자료발생시	수시	전부서	
9			소관 법령 등에 대한 입법 예고	자료발생시	수시		
10			위원회 고시	자료발생시	수시		
11			위원회 소관 규칙	자료발생시	수시		
12			위원회 훈령·예규	자료발생시	수시		
13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과제	2/4분기	매년	행정법무담당관	
14			규제개혁과제 이행실적	4/4분기	매년		
15			업무평가	주요정책(성과관리) 시행계획	2/4분기		매년
16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4/4분기		매년
17		방송통신 정책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지상파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심사결과	수시	수시	지상파방송정책과
18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허가·재허가 심사결과	수시	수시	
19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재허가 심사결과	수시	수시	
20			방송지원정책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과	수시	수시	
21	공익채널 선정 현황			12월	매년		
22	종합편성및보도전문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백서			자료발생시	수시		
23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자료발생시	수시		
24	방송통신 사업자현황		지상파방송사업자 현황	12월	매년	지상파방송정책과	
25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26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자료발생시	수시	방송지원정책과	

연번	대분류	중분류	공개내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사용사업자 현황			
27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미디어랩) 현황	수시	수시	방송광고정책과
28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현황	12월	매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29			위치정보사업자 현황	12월	매년	
30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2/4분기	매년	방송시장조사과
31		임원선임	한국방송공사 임원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부무담당관
32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33			방송문화진흥회 임원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34		공영방송	KBS,EBS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현황	3/4분기	매년	방송정책기획과
35		지역방송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활동백서	자료발생시	수시	지상파방송정책과
36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자료발생시	수시	
37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가이드라인	자료발생시	수시	전부서
38			위원회 심결집	3/4분기	매년	이용자정책총괄과
39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4/4분기	매년	이용자보호과
40		개인정보 보호	휴대전화·이메일스팸유통현황	3·9월	반기	개인정보보호윤리과
41			개인정보 침해건수	3/4분기	매년	
42		시청자지 원	방송소외계층 방송수신 보조 기기 보급현황	1/4분기	매년	방송기반총괄과
43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현황	1/4분기	매년	
44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3/4분기	매년	
45			시청자미디어센터 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46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	1/4분기	수시	
47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기준	자료발생시	수시	
48		방송기반 정책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	1/4분기	매년	편성평가정책과
49			방송평가결과	4/4분기	매년	
50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2/4분기	매년	
51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4/4분기	매년	미디어다양성정책과
52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3/4분기	매년	
53			방송산업실태조사	4/4분기	매년	
54			방송언어 가이드 라인	자료발생시	수시	방송기반총괄과
55		방송광고	광고통계(지상파, 유료, 인터넷등)	2/4분기	매년	방송광고정책과
56			방송광고관련 법규 위반 현황	2/4분기	매년	

연번	대분류	중분류	공개내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57		통신시장 조사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	매분기	분기	단말기유통 조사담당관	
58			유선전화(시내 및 인터넷) 번호이동 현황	매분기	분기	통신시장조사과	
59			단통법 관련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공시	자료발생시	수시	단말기유통 조사담당관	
60	행정 투명성	예산·결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4분기	매년	창조기획담당관	
61			전년도 결산개요	2/4분기	매년		
62			과징금(과태료) 현황	1/4분기	매년		
63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사업 자율평가	3/4분기	매년		
64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추진과제	2/4분기	매년	행정법무담당관	
65		업무추진비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매월	익월말	운영지원과	
66			실·국장 업무추진비	매월	익월말		
67		감사	감사원 감사수감 결과	자료발생시	수시		
68			자체 감사 결과	자료발생시	수시		
69		청렴	반부패, 청렴정책	자료발생시	수시		행정법무담당관
70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1/4분기	매년		
71			고문변호사 현황	2/4분기	수시		
72		행정심판	행정심판 현황	1/4분기	매년	행정법무담당관	
73		물품관리	2,000만원이상 물품 구매 현황	1/4분기	매년	운영지원과	
74		계약정보	5,000만원이상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1/4분기	매년	운영지원과	
75	계약 체결 및 변경 사항 (입찰공고)		자료발생시	수시	전부서		
76	수의계약현황		익월말	매월	운영지원과		
77	인사	직위공모 및 개방형직위 운영	자료발생시	수시			
78		임용,전보,승진(4급이상)	자료발생시	수시			
79		채용정보	자료발생시	수시	전부서		
80	국외출장	국외출장보고서	자료발생시	수시	운영지원과		
81	정보공개	정보공개처리대장	1/4분기	매년			
82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현황	1/4분기	매년			
83	기관공통	홍보	보도자료	자료발생시	수시	전부서	
84			해명자료	자료발생시	수시		
85			홍보대사 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운영지원과	

연번	대분류	중분류	공개내용	공개시기	공개주기	담당부서
86		기관장 연설·기고	위원장 연설문·기고문	자료발생시	수시	홍보협력담당관
87		정부3.0	정부3.0 추진실적	자료발생시	매년	창조기획담당관
88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	자료발생시	수시	창조기획담당관
89		MOU	MOU 체결현황	자료발생시	수시	운영지원과
90		소관위원회 현황	소속 정부위원회 현황	4/4분기	반기	창조기획담당관
91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 현황	6,12월	반기	창조기획담당관
92		정책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2/4분기	매년	행정법무담당관
93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영문)	3/4분기	매년	행정법무담당관
94			국외훈련결과보고서	자료발생시	수시	전부서
95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자료발생시	수시	
96		차량관리	공용차량 보험현황	자료발생시	매년	운영지원과
97			공용차량 정수현황	자료발생시	매년	
98		물품관리	중소기업제품 구매 계획 및 실적	1/4분기	매년	
99		도서관리	행정자료실 보유 자료 목록	4/4분기	매년	
100		기록관리	기록관 보유기록물 목록	4/4분기	매년	
101	기록관리기준		자료발생시	수시		
102	기록물 이관목록		4/4분기	매년		
103	기록물 생산목록		익일	매일		
104	보존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4/4분기	매년		
105	보존기록물 평가 결과		4/4분기	매년		

[별표 2]

##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 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밀 등에 관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국세징수법 제7조의2제3항)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 방송통신서비스제공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나 자료 중 보호요구가 있는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
운영지원과	○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 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창조기획담당관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주요인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에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창조기획담당관 (정보보안팀)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총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자체 내부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방송통신위원회 아키텍처별 현황, 정보시스템 현황, 위원회 직원 개인별 사용자 계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네트워크·주요서비스 관리 등 주요 시스템 관련 정보 및 세부 IP관리 현황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홍보협력담당관	○ 방송통신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시행 정보, 통상협상에 대한 전략수립, 의제검토, 교섭, 이행 및 통상분쟁 관련 회의 및 협상대응 정보
	○ 방송통신관련 대내외 통상환경·무역정책 및 무역관행 등에 대한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협상전략과 관련 있는 정보
	○ ITU, APEC 등 방송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의 국제협약·협정의 제·개정 등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 ASEAN 등 다자회의 및 방송통신 양자회담 시 논의된 내용 중 비공개에 합의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약·협정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중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방송통신 협력 양해각서 및 국제협약·협정문
방송정책기획과	○ 방송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3호 (생명·신체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운영지원담당관	○ 청사 방호·방화 계획 및 경비위탁내용 등 공개할 경우 범죄목적의 사용 등으로 인해 상주직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재판·범죄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 방송·통신 사업자 등에 대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 각종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 내부협의 및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 의사결정·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 법령 제·개정과 관련하여 내부보고 및 입법절차상 작성되는 문건
	○ 방송통신시장 조사를 위한 계획 및 조사시스템·조사기법에 관한 정보
	○ 기획조사 사건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분쟁사건 및 이의신청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이의신청서, 의견진술서, 재정(안) 등의 정보
	○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 통계관리 및 동향분석과 관련한 정보
	○ 방송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계획, 사실조사, 신고서, 조사결과 보고서 등
	○ 방송발전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 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내부검토 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평가의견
창조기획담당관	○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부처 간 또는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방통위가 주관부처가 아닌 업무의 의견수렴이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는 사항
	○ 주요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진행 중인 사항
	○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평가 및 관련 법령 규정 등의 제·개정 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및 속기록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운영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li> <li>-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li> <li>- 민간고용휴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소관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li> <li>- 입찰예정자 등 공개 시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 지시 처리사항 중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li> </ul>

□ 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 위원회의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직업 등 경력,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창조기획담당관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의 자체 제안 관련 내용
운영지원과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관련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명	비공개 대상정보
공통	○ 방송·통신 사업 인·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기타 업무상 취득한 방송·통신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단체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통계관리, 동향분석 및 조사 관련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기관 등이 작성한 법인·단체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관련한 대상사업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별표 3]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구서

### 1. 이의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2. 이의신청 요지

- 
- 

### 3. 정보공개처리 경과

-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